

# 엘리먼트 머티리얼스 테크놀로지

## 약관

### 1. 계약의 성립

- 1.1 본 약관(이하 '약관')은 (아래에 정의된)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제공된 견적, 제안, 추산 또는 수수료 견적(이하 '견적')과 더불어 피씨테스트코리아 주식회사(PCTEST Korea Co., Ltd.)가 수행하는 테스트, 보정 및/또는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위한 일체의 계약에 적용된다. 피씨테스트코리아 주식회사는 엘리먼트 머티리얼스 테크놀로지(Element Materials Technology) 그룹(이하 '회사')의 계열사로서 고객(이하 '고객')을 대신하여 동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1.2 본 약관은 고객의 구입주문서 또는 견적수락서 또는 시방서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여하한 약관을 대체하고 무시하며, 회사의 주문확인서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여하한 모순되는 약관 또는 법률(해당 법률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상관습, 관행이나 거래과정에 우선한다. '포함하여', '포함', '특히' 등의 용어나 여하한 유사 표현으로 시작하는 여하한 문구는 예시로 해석되며 해당 용어에 선행하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1.3 서면 및 구두 견적의 유효기한은 견적일로부터 육십(60)일이며, 회사는 언제든지 해당 견적을 철회할 수 있다. 회사에서 제공한 그 어떤 견적도 여하한 개인과의 계약 제의가 아니며, 1.4 항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계약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 1.4 고객의 구입주문서나 고객의 견적수락서는 본 약관에 따라 견적에 적시된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고객의 제의를 구성한다. 본 약관상의 서비스에 대한 공급 및 구매 계약(이하 '계약')이 수립될 예정인 경우, 회사에서 서면 승낙서를 발행하고 이행하거나 (시기가 더 이른 경우) 회사에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고객이 제시한 그 어떤 제의도 회사에 의하여 수락되지 아니한다.
- 1.5 2.1 항에 따라 본 약관의 변경에 회사가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의 구입주문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여하한 문서에 대한 그 어떤 수락서 또는 승낙서(서면으로 회사가 서명한 경우도 포함)도 본 약관과 상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고객의 주문확인서 또는 기타 여하한 문서의 여하한 조항에 대한 수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1.6 회사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또는 보정을 위한 여하한 물품(이하 '견본')을 고객이 회사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기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여하한 요청을 고객이 회사에 전달하는 행위는 회사에서 해당 견본 또는 요청을 수락하는 즉시 (1.4 항에 언급된) '제의'를 구성한다. 회사에서 해당 견본에 대한 테스트, 보정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회사에서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본 약관은 해당 계약에 적용된다.

### 2. 취소, 연기, 수정을 포함한 변경

- 2.1 변경 또는 권리 포기를 서면으로 표명하고 회사의 임원 또는 수권서명인이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쌍방 모두 본 약관을 변경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변경 또는 권리 포기에는 변경 또는 포기의 대상인 조 또는 항, 그리고 각각의 변경 또는 권리 포기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2.2 고객은 여하한 주문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언제든지 취소, 연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단, 고객은 해당 주문과 관련된 보수 전액(3.1 항에 정의)와 더불어 취소, 연기 또는 수정일 이전에 회사에 의하여 발생된 해당 주문 관련 비용 일체(3.1 항에 정의), 그리고 취소, 연기 또는 수정의

결과로 회사에 의하여 발생된 기타 여하한 손실, 경비 및 비용을 회사에 지급한다.

- 2.3 원래 견적이 제공된 이후로 계약과 관련된 문서, 시방서 또는 기타 자료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견적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추가 서비스가 요청되는 경우(예: 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한 세부 절차에 대한 서면 설명서 작성) 회사는 여하한 견적 가격을 검토하고 수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의심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추가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권으로 남긴다.
3. 가격 및 지급
  - 3.1 고객은 해당하는 경우 견적에 적시된 요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달리 명시된 요금(이하 '보수')을 회사에 지급하며, 달리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되지 아니한 한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여하한 경비(이하 '비용')를 요청 시 회사에 지급한다.
  - 3.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3.2.1 서비스 완료 시 발행
    - 3.2.2 회사에서 합당하게 만족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개별 부분 완료 시 발행(이 경우 회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 총액 중 해당 비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3.2.3 견적(견적 내 개별 행 포함) 또는 주문확인서에 달리 명시된 방식으로 발행
  - 3.3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여하한 세금계산서에 적시된 보수 및 비용 전액을 공제 또는 상계 없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삼십(30)일 안에 지급한다. 고객이 원천징수세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보수는 세금의 부담 없이, 그리고 세금에 대한 및 세금을 사유로 한 공제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공제가 요구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그러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 이후에도 회사가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지 아니하였을 시 수령하였을 보수 및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한다.
  - 3.4 고객은 회사의 견적, 제안서 또는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통화로 된 인출 가능 자금으로 전자은행이체를 통하여 보수 및 비용을 회사에 지급한다. 회사에 지급할 금액 일체는 고객이 제 3 자로부터 지급액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된 기한 안에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의심의 여지를 방지하되 상기 내용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여기에는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행하는 변호인의 지시를 받는 경우 회사가 전문가 또는 전문가 증인 역할을 하는 데 따른 수수료의 지급도 포함된다.
  - 3.5 삼십(30)일 내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을 위한 여하한 추가 서비스의 수행을 중지하고, (4.2 항에 정의된) 보고서의 제공을 보류하고, 신용조건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 계약조건이나 가격, 서비스 수준을 수정할 수 있다. 미지급액은 수시로 이자가 부과되며, 이러한 이자는 세금계산서 만기일로부터 해당 금액의 전액 수령일까지 연 6%로 계산된다.
  - 3.6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기일이 도래한 여하한 금액을 유지하거나 계약에 따라 또는 당사자 쌍방이나 그 그룹사 사이의 기타 여하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여하한 금액으로부터 상계할 수 있다. 기업과 관련하여 '그룹사'는 해당 기업, 해당 기업의 여하한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그리고 해당 기업의 지주회사의 여하한 자회사를 의미한다.

3.7 고객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그리고 서비스 완료 이후 6 개월 동안 다음을 수행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3.7.1 고객의 구입주문서 일자과 견적 일자 중 이른 날짜 바로 직전의 12 개월 동안 계약 및/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과 거래한 회사의 여하한 직원을 영업 또는 유인(또는 타인에 의한 영업 또는 유인 조력)

3.7.2 3.7.1 항에 언급된 여하한 인력을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고용하거나 여하한 방식으로 해당 인력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여

이러한 약속은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접촉을 받지 아니하고 고객에 의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게재된 광고에 응답한 회사의 여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속의 위반으로 인하여 3.7.1 항에 언급된 여하한 인력의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요청 시 해당 인력의 퇴사 이전에 회사에서 지급한 연간 보수 패키지 총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한다. 고객은 본 조항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임을 확인한다.

#### 4. 서비스

4.1 본 4 조의 나머지 항의 적용을 받아, 회사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도록 만족스럽고 정밀하게 서비스를 완료할 것을 보증한다.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여하한 결과 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테스트 및 이론연구에 기반을 둔 결과의 경우 양산 규모로 외삽하려면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4.2 회사는 서비스를 완료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서면 정보, 결과, 기술 보고서, 증명서, 테스트 또는 검사 기록, 도면, 권고사항, 자문 등(이하 '보고서') 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를 고객이 합리적으로 서면 요청한 여하한 일자까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회사는 (i) 계약에 따른 여하한 의무 수행의 여하한 지연 또는 (ii) 그러한 지연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3 계약에 따른 서비스 완료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수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회사에 구속력을 가지는 여하한 법률 또는 기타 규제의 준수를 위한 여하한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4.4 어떠한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인원도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여하한 보증 또는 진술을 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타 여하한 책임을 회사에 지우도록 인가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보증, 진술 또는 책임 적용이 2.1 항에 따라 고객에게 주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4.5 서비스 수행의 일환으로 전달 또는 해석된 방사선 촬영 보고서 및 필름과 관련하여, 고객은 방사선 촬영의 품질 또는 결과의 해석에 대한 고객 또는 제 3 자의 여하한 분쟁에 대하여 해당 방사선 촬영 보고서 및 필름의 발행일로부터 십사(14)일 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러한 십사(14)일 기간 내에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방사선 촬영 보고서 및 필름, 그리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여하한 해석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4.6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이행을 목적으로 하여 회사에 제공된 문서 및 정보 일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공급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회사에게 표시하고 보증한다.

4.7 회사는 견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회사는 테스트 대상 품목이 확인된 시방서 또는 견적에 명시된 테스트 기준 이외의 여하한 시방서 또는 테스트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거쳤거나 해당 시방서 또는 기준을 준수함을 표시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한다.

4.8 보고서는 서비스 수행 시점에 회사에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발행된다. 회사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모두 기울일 것이나, 서비스는 특히 고객과 그 임직원의 효과적 협력, 그리고

회사에 접수된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보고서는 다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다.

4.8.1 고객 이외의 여하한 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8.2 여하한 특정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한 그 어떤 진술도 여하한 상황에서 진술, 약속, 보증 또는 계약조건이 되거나 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8.3 보고서는 오로지 각각의 개별 계약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전문적 분석을 통하여 판단되며, 결과에 대한 회사의 여하한 예측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4.8.4 회사는 보고서에서 도출한 결과 또는 결론과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받을 자격을 가진다.

4.8.5 서비스의 결과는 오로지 접수된 품목 및 정보만을 다루어야 하며, 견본을 취했던 여하한 대형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8.6 결과는 최종적인 것으로 회사에 의하여 승인된다. 고객이 승인되지 아니한 예비 결과 또는 자문을 바탕으로 행동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5. 고객의 자산

5.1 고객은 효과적인 서비스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의 견본 및/또는 서비스 요건에 대한 고유 구입주문서 번호, 참조 또는 인가를 포함하는 정보를 최대한 공급한다. 고객이 자산 중 특정 품목의 처리 및 취급에 대한 상세 서면 지시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지시를 준수하고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5.2 고객은 회사가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성질을 가진 고객 현장 또는 견본에 대한 여하한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앞서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고지하고, 견본과 관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서비스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실제 또는 잠재적 보건 및 안전 위험을 회사에 통지하고, 안전한 현장 방문 및 안전한 견본 취급에 대한 지시를 제공한다.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견본 및 여하한 장비와 관련하여 고객은 적절한 안전 라벨을 부착할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5.3 고객은 견본에 대한 비파괴 테스트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음을 계약에 적시한 5.4 항이 적용됨에 따라,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전달한 여하한 견본과 기타 여하한 재료 또는 자산 일체가 서비스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고객 자산의 파괴 또는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적 손상과 간접 비용 또는 손실을 포함하는 여하한 추가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4 테스트, 분석 또는 기타 서비스 수행 시 회사는 고객의 소유인 여하한 자산의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고객이 회사에 전달하기에 앞서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회사에 전달된 자산 자체에 '파괴 또는 손상 금지'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통지가 이루어지고 고객 자산에 이러한 표시가 된 경우, 고객 자산의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5.4.1 고객 자산의 가액

5.4.2 계약에 따라 손상된 자산에 대하여 수행된 서비스의 비용

#### 6. 재전달

6.1 회사는 고객의 합리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고객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한 후 해당 자산(서비스의 일환으로 파괴된 자산은 제외)을 고객에게 다시 전달한다. 회사는 합리적으로 결정한 여하한 전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수행하고 이렇게 전달된 해당 품목에 대한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는 해당 자산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여하한 자에게 해당 전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직접 발행하도록 재량에 따라 지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동 과정에서 손상된

- 자산에 대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 일체를 해당 배송업자 또는 기타 인원에게만 직접 하여야 한다.
- 6.2 고객은 서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서비스 완료 시점으로부터 삼(3)개월 후 고객의 자산을 적절히 처분할 권리를 보유한다. 회사는 여하한 처분 비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회사의 단독 의견상 고객의 자산이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불안정하여 보관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파기 전 보관 기간은 회사의 절대적 재량권으로 한다.
7. **권원과 보장**  
회사에 전달된 고객 자산에 대한 권원, 그리고 해당 자산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 위험 일체(이러한 손실 또는 손상이 회사에서 초래한 것이며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 경우 및 그 정도는 예외)는 항상 고객의 소유로 남는다. 고객은 이에 대한 자체 보험 보장을 발효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본 약관을 통하여 고객은 회사의 요금에 보험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일체가 지급될 때까지 회사는 전달된 자산 일체를 보유한다.
8. **책임과 면책**
- 8.1 본 8 조는 여하한 계약 위반, 서비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건본 또는 그 여하한 부분에 대한 여하한 이용, 그리고 계약 하에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진술, 서술 또는 불법행위나 누락(부주의 또는 법적 의무 위반의 경우 포함)에 대하여 회사와 그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자가 고객에게 지는 완전한 금전적 책임을 명시한다.
- 8.2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었으며 2.1 항에 따라 회사의 임원 또는 수권서명인이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서면 보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보증과 조건, 기타 조항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법령, 관습법, 관습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한 묵약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에서 허용한 최대한도로 계약에서 배제된다.
- 8.3 본 8 조의 나머지 항의 적용을 받아, 회사는 다음에 대하여 불법행위(부주의 또는 법적 의무 위반의 경우 포함), 계약, 허위 진술 또는 기타 사항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8.3.1 수익의 상실, 사업의 상실, 매출액의 상실, 시장의 상실, 제 3 자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영업권의 상각 및/또는 유사 손실, 기대수익의 상실, 제품의 상실, 계약의 상실, 이용권의 상실, 데이터 또는 정보의 상실 또는 변질, 임의 지급
- 8.3.2 여하한 특별, 간접 또는 결과적 손실, 비용, 손해, 요금, 벌금, 위약금 또는 경비, 또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
- 8.4 8.3 및 8.6 항의 적용을 받아, 고객에 대한 회사의 계약, 불법행위(부주의 또는 법적 의무 위반의 경우 포함), 허위 진술, 배상 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 고려와 관련하여 달리 발생하는 부채 총액은 모든 상황에서 (i) 8,000,000 원 또는 (ii) 계약 하에 해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회사가 사기 또는 사기성 은폐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는 계약에 따른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실행이 불가능하다.
- 8.4.1 고객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이(2)개월 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된 서비스가 완료된 후 1년 내에 추정되는 근거를 상세히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
- 8.4.2 회사가 서비스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부분 또는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달리 관계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자산 일체를 검사하도록 허가된 경우
- 8.5 고객은 본 8 조의 상기 조항이 합리적이며 해당 조항이 없었다면 더욱 높게 책정되었을 가격에 반영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고객은 이러한 위험을 수용하고/수용하거나 이에 따라 보험에 들도록 한다.
- 8.6 고객은 다음으로 인하여 또는 다음의 결과로 고객이 입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손실 일체에 대하여 회사를 면책하고, 면책 상태를 유지하고, 책임을 면제하기로 동의한다.
- 8.6.1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한 고객의 여하한 법률 위반
- 8.6.2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서비스 수행 과정의 여하한 지연이나 서비스 수행 실패로 인하여 여하한 제 3 자가 회사를 상대로 위협하거나 진행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회사의 잘못 또는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 포함)로,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되는 계약 하의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해당 손해배상 청구액이 초과하는 정도에 따름
- 8.6.3 회사에서 발행한 여하한 보고서 또는 계약에 따라 회사가 소유하는 여하한 지적재산권(상표권 포함)의 오용 또는 인가되지 아니한 이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
- 본 약관의 기타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책 하의 고객의 책임은 무제한이다.
- 8.7 본 약관의 그 어떤 내용도 다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 8.7.1 부주의로 인하여 초래된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 8.7.2 회사의 사기 또는 사기적 허위 서술의 결과로 고객에게 발생한 책임
- 8.7.3 법률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기타 여하한 사안
- 8.8 본 8 조는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9. **지적재산권**
- 9.1 본 9 조에 적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권:** 모든 특허, 발명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권, 서비스표권, 상호·법인명·도메인명 소유권, 트레이드 드레스권 또는 외장권, 영업권 또는 사칭통용 고소권, 불공정경쟁권, 의장권, 컴퓨터 소프트웨어권, 데이터베이스권, 배치설계권, 저작인격권, 기밀정보권(노하우 및 영업비밀 포함), 기타 여하한 지적재산권(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을 나타낸다. 등록 또는 미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신청과 갱신 또는 연장 일체, 그리고 전 세계 여하한 지역의 유사하거나 상응하는 보호 권리 또는 형태 일체를 포함한다.
- 9.2 여하한 서비스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기록, 과학 문서, 일차 데이터 또는 전자적 데이터 취급 수단에 대한 저작권 포함)은 계약의 일부로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의 자산으로 남는다.
- 9.3 보고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로 남는다. 고객이 보수의 지불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의무 일체를 이행하는 즉시, 9.2 항과 본 9.3 항의 조건에 따라 고객은 취소 불가능하고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비배타적 보고서 이용 면허(2 차 면허 발급권 포함)를 취득하게 된다..
- 9.4 서비스표, 상표, 증명표, 회사에서 보유한 기타 명칭 및 로고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회사의 자산으로 남으며 고객이 판매하거나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 9.5 증명 부여 시 회사는 증명 유효기간 동안 회사의 증명표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고객에게 부여하며, 여기에는 각 증명서와 함께 발행되며 요청 시 제공되는 해당 약관(수시로 수정)이 적용된다.
- 9.6 고객은 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고객이 공급한 여하한 데이터, 장비 또는 기타 자료의 이용이 여하한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수반한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손실 일체로부터 회사를 면책한다.
- 9.7 10 조에 명시된 사용권을 제외하고, 계약은 당사자 쌍방에게 상대방의 여하한 명칭 또는 표장에 대한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당사자 쌍방 모두 여하한 간행물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명칭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서명 등의 없이는 계약, 서비스 또는 여하한 거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공식 발표를 할 수 없다.

## 10. 보고서의 이용

10.1 보고서는 보호의 대상이며 다음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 기밀정보에 해당한다.

- 10.1.1 고객의 내부 요건 충족과 회사의 고객 대상 서비스 수행 지원
- 10.1.2 보고서에 나열된 데이터 전달 및 이용을 위한 고객의 고객 및 기타 제 3자 요건 준수
- 10.1.3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제기 또는 대응(단,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 이것인 경우 보고서 작성 전에 회사와 합의 완료)
- 10.1.4 법률 또는 여하한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른 제기 또는 대응

10.2 본 약관에서 고객은 다음을 수행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 10.2.1 10.1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보고서(또는 보고서 내에 포함된 정보)를 여하한 제 3자에게 공개
- 10.2.2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에서 전달한 전체 내용 이외의 방식으로 보고서를 복제 또는 제시
- 10.2.3 회사 또는 그 그룹에 대하여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 또는 그 여하한 일부를 이용,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일 수 있는 서술, 해석 또는 논평일 수 있거나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그 여하한 일부를 이용

## 11. 부지

회사의 부지(이하 '부지')는 지정된 보안구역으로 다음에 해당한다.

- 11.1.1 회사는 부지 입장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한다.
- 11.1.2 회사가 사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한, 요청 시 고객당 방문객 1인이 입장하여 해당 고객을 위하여 수행되는 서비스에 입회할 수 있다.
- 11.1.3 부지 방문객은 회사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서비스의 여하한 측면이 회사에서 점유하지 않거나 회사의 직접적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부지에서 수행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하는 보건 및 안전 규제 일체의 준수에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였거나 석면의 식별이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모든 석면이 제거되고/제거되거나 상기 부지 방문 중 회사 인력이 방문할 모든 구역에서 안전하게 격납되도록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11.3 견적 및 11.2 항의 조항에 명시된 여하한 구체적 고객 의무와 더불어, 서비스가 고객 부지에서 제공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i) 여하한 회사 부지에 대한 필요한 접근권을 회사에 제공
- (ii) 서비스의 여하한 일부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여하한 부지가 해당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
- (iii) 고객이 공급한 여하한 부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보조재료 및 운영재료(가스, 물, 전기, 조명 등 포함) 일체 제공
- (iv)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여하한 허가를 회사에 제공

## 12. 법원 및 기타 법적 절차

12.1 고객이 증인 진술, 법원 심리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서 회사가 수행한 서비스의 결과 또는 발견사항을 제시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가 수시로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당 발표 및 준비에 대한 비용 및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고객은 보수에 더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2.2 고객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고객을 위하여 회사가 수행한 서비스의 결과 또는 발견사항을 제시할 것을 고객 이외의 당사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여하한 증인 진술의 준비와 여하한 법원 심리 준비 및 출석을 포함하여 그 결과 회사가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여하한 서비스에서 발생한 비용 및 수수료 일체를 지급한다. 고객이 계약에 따른 보수 잔액 일체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고객의 파일을 마감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은 해당 금액 일체를 지급한다.

12.3 서비스의 여하한 측면 또는 요소(여하한 견본 포함)가 법적 절차의 주체가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주체가거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바탕으로 전문가 증언을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12.4 본 12 조는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 13. 계약의 종료

본 13 조의 목적에 있어 '제재규칙'은 수시로 시행 중인 여하한 적용 가능한 무역 또는 경제 제재, 수출통제, 금수조치 또는 유사 법률, 규제, 규칙, 조치, 제한조치, 제한 또는 지정 당사자 목록, 면허, 명령 또는 요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국제연합의 해당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3.1 고객에게 13.2 항에 나열된 여하한 사건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13.2 13.1 항의 목적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3.2.1 고객이 계약 또는 회사와 체결한 기타 여하한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였으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구제조치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구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회사의 서면 통지에 따라 상기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고객이 구제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3.2.2 고객이 명시된 기간 내에 보수를 지급하는 데 실패한 경우

13.2.3 고객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여하한 부채 상황을 중단 또는 유예하거나 지급 기일이 도래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원이 관장하는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청이 이루어져 신청 후 45일 내로 기각되지 아니한 경우

13.2.4 고객의 중요 자산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 처분 등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 이전이나 청산 또는 해체를 결의하는 경우

13.2.5 고객이 사업 영위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13.2.6 상기 13.2.1~13.2.5 항에 언급된 여하한 사건이 고객과 관련하여 곧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회사가 그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13.2.7 서비스 제공 또는 고객과의 거래가 제재규칙 위반이라고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고객이 제재규칙이나 기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와 관련한 회사의 실사 요청을 충족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제재규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제재규칙 위반을 초래하게 될 여하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13.3 여하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종료 시 고객은 회사에 대한 부채 일체를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회사에 즉시 지급한다.

13.4 계약의 종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더라도 종료 시점 기준으로 축적된 여하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조치, 의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5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효력이 유지되는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계속해서 발휘한다.

## 14. 불가항력

여하한 불가항력, 홍수,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병, 전쟁, 무력 충돌, 제재 부과, 금수 조치, 또는 외교관계 단절, 폭동, 사고, 테러, 폭발, 파업이나 노동쟁의, 여하한 법률, 또는 수출 또는 수입 규제, 한도량 적용 또는 금지, 필요한 면허 또는 동의 미부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정부나 공공당국의 여하한 조치, 하도급업체나 소재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지연 또는 채무불이행, 의무 이행을 상업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하한 상황의 존재, 또는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기타 여하한 요인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여하한 의무의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이 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그러한 의무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계약에 따른 회사의 여하한 지급 책임에는 본 14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준수에 대한 권리 포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의 위반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는 해당 조항의 향후 준수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해당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16. 계약의 완전성**

16.1 계약은 당사자 쌍방간의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이전의 합의, 약속, 확약, 보증, 진술 및 양해사항 일체를 대체하고 소멸시킨다.

16.2 당사자 쌍방은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여하한 서술, 진술, 확약 또는 보증(무지와 부주의로 인한 경우 모두 해당)과 관련한 구제조치가 없음에 동의한다.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여하한 서술을 바탕으로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허위 진술이나 부주의로 인한 허위 서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17. 계약 요소의 개별성**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 또는 구제조치가 여하한 준거법에 따라 그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인 경우, 그 목적을 유지하면서 실행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능한 선에서 수정되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하한 잔여 채무불이행 구제조치를 포함한 본 약관의 잔여 조항은 본 약관의 의도에 따라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삭제가 계약에 따른 회사의 권리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단독 재량권을 바탕으로 칠(7)일 이상의 서면 통지를 고객에게 전달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8. 제휴 또는 대리 금지**

18.1 계약의 그 어떤 조항도 당사자 간의 여하한 제휴 또는 합작을 수립하거나, 당사자 일방을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여기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상대방을 위하여 또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여하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상기 내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아니한다.

18.2 당사자 쌍방은 스스로를 위하여 행동하며 기타 여하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9. 제 3 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1999년 계약(제 3자의 권리)법에 따라 계약의 여하한 조건을 집행할 그 어떤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20. 정보의 보호**

본 20 조의 목적에 있어 '정보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정보보호 준거법을 의미한다.

20.1 본 20 조에서 '처리하다/처리/처리된', '정보처리 담당자', '정보주체',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0.2 고객은 서비스의 제공에 달리 필요하지 아니한 한 업체 담당자 정보(예: 업체명, 전화번호, 직함, 이메일 주소) 이외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만들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단, 서비스의 제공에 달리 필요한 경우 고객이 이러한 추가 개인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3 본 계약 하의,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보처리 담당자로서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20.3.1 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정보주체)의 적법하고 문서화된 합리적 지시(이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라는 지시임)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 이전, 조정,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여하한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인정보의 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정보처리 담당자는 처리에 앞서 해당 법적 요건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에서 중요한 공익을 이유로 이러한 고지를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하한 개인정보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오로지 서비스 수행의 필요성 안에서, 그리고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수집, 처리, 이용됨을 정식으로 인정한다.

20.3.2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는 즉시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 (b)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합리적 협력 제공

20.3.3 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의무와 관련한 여하한 요청, 민원 또는 연락을 받는 즉시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주체에 통지
- (b) 계약에 따른 정보처리 담당자의 권리 실행을 정보주체가 준수하거나 여하한 정보처리법에 따른 여하한 평가, 질의, 통지 또는 조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정보주체 지원. 단, 각각의 경우 정보주체는 본 20.3.3 항에 따른 의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처리 담당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일체를 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전액 정산한다.

20.3.4 최소한 여하한 정보보호 준거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이행 및 유지

20.3.5 개인정보 접근권을 보유한 모든 인원이 기밀유지를 약속하거나 적절한 법적 기밀유지 의무를 지며, 여하한 정보보호 준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고지를 받도록 보장한다.

20.3.6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영토 안에서만 정보처리 담당자 또는 정보주체가 인가한 하위 처리 담당자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이용되도록 보장한다. 다른 국가(이하 '제 3 국')로의 여하한 이전은 정보주체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며, 제 3 국 정보 수출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20.3.7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하도급업자(이하 '하위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인가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하위 처리 담당자의 임명에 동의하며, 이들 하위 처리 담당자는 수시로 정보처리 담당자의 관여를 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 담당자에게는 각각의 경우 본 20 조에 명시된 내용보다 보호 수준이 낮지 아니한 정보처리 담당자와 하위 처리 담당자 사이의 계약조건이 적용된다. 단, 정보처리 담당자는 이러한 하위 처리 담당자의 신원과 이들에 대한 여하한 변경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20.3.8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 구십(90)일 안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그보다 이른 경우 관계된 서비스를 중단한 후 최대한 빨리(정보주체의 의함에 따라)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정보나 그에 포함된 정보의 여하한 사본을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시스템에서 제거한다. 단, 정보처리 담당자가 법적 또는 규제 요건으로 인하여, 또는 인증기관의 요건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20.4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정보주체가 이러한 추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지시를 받은

감사가 수행하는 여하한 감사 또는 검토 활동을 허용하고 이에 기여하여 정보처리 담당자가 본 20 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한다는 확약을 제공한다. 단, 언제나 이러한 요건은 정보처리 담당자가 (i) 정보처리 담당자의 내부 가격정책 (ii) 정보처리 담당자의 기타 고객사와 관계된 정보 (iii) 정보처리 담당자의 여하한 비공개 외부 보고서 (iv) 정보처리 담당자의 내부 감사 또는 준법 부서에서 작성한 여하한 내부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정보처리 담당자는 계약에 따라 정보주체가 제공한 지시가 여하한 정보처리 준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주체에 반드시 이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21. 하도급

- 21.1 계약의 조건 및/또는 여하한 인가 또는 규율 승인 하의 의무에 의하여 달리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전체 또는 여하한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진행할 자격을 가진다.
- 21.2 회사는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할당하거나, 위임하거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탁할 수 있다.
- 21.3 계약은 고객 개인과의 계약으로,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할당하거나, 위임하거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 22. 기밀유지

본 22 조의 목적에 있어 '기밀정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이후에 보유하고나 취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사업, 제품, 개발, 영업비밀, 노하우나 기타 서비스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일체, 당사자의 실제 또는 잠재 고객사, 고객 또는 공급업자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기밀로 지정되었거나 기밀로 간주되어야 합리적인 기타 정보 일체를 의미한다.

- 22.1 각 당사자(이하 '수신자')는 상대방(이하 '공개 당사자')의 기밀정보 일체를 엄격한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자는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수령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거나, 접근권을 제공할 수 없으며, 자사 직원, 대리인 또는 임원이 해당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거나,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
- 22.2 22.1 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는 다음의 경우 자신이 수령한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22.2.1 여하한 정부, 지자체 또는 규제당국, 여하한 인증기관 또는 법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단, 엄격하게 요구되는 수준에 한하여 공개)
  - 22.2.2 오로지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적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
  - 22.2.3 공개 당사자의 공개 시점 이전에 수신자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인 경우(수신자는 증거 서류를 통해 동일 내용을 증명 가능)
  - 22.2.4 수신자의 계약 위반 이외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가 이후 모두에게 알려진 지식이 된 경우
- 22.3 여하한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또는 2004년 환경정보규정에 따라 수신자에게 정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는 공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요청 대상 정보가 공개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하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22.4 본 22 조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시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된다.

## 23. 수출통제면허

본 23 조의 목적에 있어 '수출통제면허'는 대한민국, 영국 또는 여하한 해외 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발행한 여하한 공공 또는 정부 면허, 승인, 허가 또는 유사한 처분(임시 또는 영구)을 의미한다. 제품의 판매, 수입, 수출, 재수출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또는 기술 및/또는 지적재산권의 이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취득이 수시로 필요하다.

- 23.1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 수행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출통제면허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출통제면허에 서명된 최종 사용자 증명서나 대한민국, 영국 또는 여하한 해외 정부 또는 법원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은 이와 관련된 최종 사용자 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이나 동의를 완료하도록 상대방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며 고객은 이러한 최종 사용자 증명서, 수출통제면허 또는 제한조치의 조건을 준수하고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 23.2 고객은 여하한 제품, 정보 또는 기술이 해당 거래가 금지된 국가로부터 또는 그러한 국가에 수출/수입될 수 있는 여하한 상황을 포함하여 제공 대상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여하한 적용 가능한 수입 또는 수출 제한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여하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고지할 것을 표시하고 보증한다.
- 23.3 회사는 필요한 수출통제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당사자 쌍방은 수출통제면허의 발행 여부가 관계당국의 단독 재량권임을 인정한다. 필요한 수출통제면허가 지연, 거부 또는 철회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빠르게 고객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회사는 이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한 수출통제면허가 거부 또는 철회되는 경우 고객과 관련된 책임 없이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할 자격을 가진다.
- 23.4 회사의 서비스 또는 여하한 제품에 여하한 수출통제면허 또는 대한민국, 영국 또는 여하한 해외 정부나 법원의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수출통제면허 또는 제한조치의 유효한 조건을 수시로 준수하고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 24. 부패방지

- 24.1 고객은 대한민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OECD 뇌물방지협약, 영국의 2010년 뇌물수수법, 미국의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이하 '반부패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뇌물방지 및 반부패 관련 준거 법률, 법령, 규제, 규정 일체를 준수하고 여하한 반부패법에 대한 회사의 위반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의 수행 또는 미수행을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고객은 다음을 수행한다.
  - 24.1.1 회사에서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시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의 반부패 정책(이하 '관련 정책') 준수
  - 24.1.2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고객이 받는 여하한 유형의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에 대한 여하한 요청 또는 요구를 회사에 즉시 보고

## 25. 통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편으로 전달할 경우 전달 시점에, 그리고 해당 시 등록 주소지(해당하지 아니할 시 가장 최근에 알려진 상대방의 주소지)에 1등 우편 또는 요금 선불 항공우편으로 우송한 경우 우송 시점으로부터 사십팔(48)시간 후에 정식으로 배송 또는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26. 권리 불포기

여하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에 대한 회사의 그 어떤 실행 실패 또는 지연도 그에 대한 권리 포기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부분적 실행도 동일한 또는 일부 기타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추가 실행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27. 준거법

- 27.1 계약, 그리고 계약 또는 그 주제 또는 성립으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 또는 손해배상 청구(계약 외 분쟁 또는 손해배상 청구 포함)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27.2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제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상호 합의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한다.

